

2월1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 번호	건축 구분	심의 구분	대지위치	대지면 적	건축면 적	연면적	건폐 율	용적 율	주용도	층수	용도 지역	비고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20650 0000P00 0072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 흘리 3075	2,752	295.9	275.9	10.75	10.75	제1종근린 생활시설	1/0	보전관리 지역		반려	<p>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곳자왈 지역으로써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</p> <p>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